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971호 2025년 9월 25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삼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1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2호)	9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3호)	16
○ 2026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4호)	20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5호)	21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6호)	31

■ 공 고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64호)	33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67호)	34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70호)	35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규제특례 적용(안)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71호)	37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공원:오태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5-240호) 100
-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5-193호) 109
- 상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5-194호) 111

■ 공 고

- 경산 도시관리계획(옥산5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5-1716호) 114

기 타

■ 고 시

-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550호) 117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586호) 121

■ 공 고

- 과태료 독촉(최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5-9호) 123
- 과태료 독촉(최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5-10호) 125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128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1호

심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심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배수장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일원
- 수혜면적 : 10.5ha
- 사업계획개요
 - 간이배수장 1개소 $Q=0.34\text{m}^3/\text{s}$
 - 배수로 1조 $L=470\text{m}$
 - 배수암거 1조 $L=11.0\text{m}$

3. 사업비소요액 : 1,800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2025. ~ 2026.

5. 사업시행자 : 칠곡군수(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6. 기 타 : 관련 설계도서는 칠곡군 건설과(054-979-6788),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농어촌사업부(054-800-50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당초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군	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21필지		74,068	2,286	-	-				
1	칠곡	가산	심곡	87-2	구	207	68	임규상	대구시 달성동 133				
2	칠곡	가산	심곡	88-1	구	278	90	홍은숙	가산면 심곡리 80-5				
3	칠곡	가산	심곡	89-1	과	1,384	36	김덕순	가산면 심곡1길 17				
4	칠곡	가산	심곡	304-4	천	180	17	국 (건설부)					
5	칠곡	가산	심곡	304-5	천	333	15	국(건설 교통부)					
6	칠곡	가산	심곡	305-3	천	288	34	전용상외 4	가산면 심곡동34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당초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군	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7	칠곡	가산	심곡	306	임	208	114	박형순	대구시 북구 연경중앙대로 55 103동803호				
8	칠곡	가산	심곡	306-1	임	243	19	국(국토 해양부)					
9	칠곡	가산	심곡	306-2	임	45	1	국(국토 해양부)					
10	칠곡	가산	심곡	306-3	임	198	3	칠곡군					
11	칠곡	가산	심곡	307-1	전	1,152	306	박형순외 1	대구시 북구 연경중앙대로 55 103동803호				
12	칠곡	가산	심곡	307-2	전	717	83	칠곡군					
13	칠곡	가산	심곡	308	천	474	330	천추만	가산면 심곡리				
14	칠곡	가산	심곡	308-1	천	1,033	284	천추만	가산면 심곡리				
15	칠곡	가산	심곡	309-3	전	615	52	김나현	가산면 송신로 536-3				
16	칠곡	가산	심곡	400-3	임	1,484	527	국(기획 재정부)					
17	칠곡	가산	심곡	401-1	천	649	63	오용석	가산면 심곡리				
18	칠곡	가산	심곡	456-1	천	55133	28	국 (건설부)					
19	칠곡	가산	심곡	456-102	천	1617	16	경상북도					
20	칠곡	가산	심곡	456-4	답	1,029	32	황옥자외 2인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9-12				
21	칠곡	가산	심곡	456-85	천	6801	168	국 (건설부)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2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의성군 산불피해복구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내역(2025) - 2차

연번	면 리	지 적 공 부			편입면적 (㎡)	사방종류	비고
		지번	지목	면적(㎡)			
	계	31필지		2,452,519	1,712		
소계		3필지		1,354,988	677		
1	단촌 구계	산213	임	1,346,953	668	사방댐	
		산213-2	구	2,910	1		
		1179	구	5125	8		
소계		5필지		143,409	9		
2	단촌 하화	산47	임	143,409	9	계류보전	
		산47-4	임	110,904	53		
		1221	구	2,975	241		
		1238	도	387	40		
		341	전	383	9		
소계		4필지		288,852	90		
3	단촌 방하	산180-3	임	102,648	1	산지사방	
		산180-4	임	185,455	76		
		산187-4	구	132	12		
		1360	구	617	1		

연번	면 리	지 적 공 부			편입면적 (㎡)	사방종류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소계		1필지		75,272	136		
4	점곡 사촌	산11	임	75,272	136	사방댐	
소계		2필지		29,445	136		
5	점곡 동변	산106	임	28,959	131	사방댐	
		산106-2	구	486	5		
소계		2필지		472,724	2		
6	점곡 동변	산109	임	472,724	2	산지사방	
		1248	구	833	127		
소계		2필지		48,596	302		
7	점곡 명고	산69-1	임	48,596	302	계류보전	
		산69-4	도	108	10		
소계		3필지		595	264		
8	점곡 윤암	산141-1	구	595	264	사방댐	
		산142	임	139,128	645		
		1180	구	182	8		

연번	면 리	지 적 공 부			편입면적 (㎡)	사방종류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소계		9필지		38,638	96		
9	안평 신월	1261	구	38,638	96	사방댐	
		1264	도	10,102	47		
		850	대	248	11		
		842	전	450	67		
		841	전	228	29		
		840	임	159	61		
		산179-1	임	50,794	51		
		산178-1	구	595	42		
		산178	임	21,514	22		

사방지 지정 검토의견(사방지 지정내역(2025) - 2차)

연번	면 리	지 적 공 부			편입면적 (㎡)	소유자	검토의견
		지번	지목	면적(㎡)			
	계	31필지		2,452,519	1,712		-
소계		3필지		1,354,988	677		
1	단촌 구계	산213	임	1,346,953	668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동의완료
		산213-2	구	2,910	1	국 (건설교통부)	
		1179	구	5125	8	국 (농수산부)	
소계		5필지		143,409	9		
2	단촌 하화	산47	임	143,409	9	마호구 외 2	동의완료
		산47-4	임	110,904	53	마숙덕외 3 (장흥마씨문중)	동의완료
		1221	구	2,975	241	국 (농수산부)	
		1238	도	387	40	국 (건설교통부)	
		341	전	383	9	최상연	동의완료
소계		4필지		288,852	90		
3	단촌 방하	산180-3	임	102,648	1	최명식외 2	동의완료
		산180-4	임	185,455	76	아주신씨 읍파문중	동의완료
		산187-4	구	132	12	국 (건설교통부)	
		1360	구	617	1	국 (농수산부)	

연번	면 리	지 적 공 부			편입면적 (㎡)	소유자	검토의견
		지번	지목	면적(㎡)			
소계		1필지		75,272	136		
4	점곡 사촌	산11	임	75,272	136	정재기	동의완료
소계		2필지		29,445	136		
5	점곡 동변	산106	임	28,959	131	김진욱	동의완료
		산106-2	구	486	5	국 (건설교통부)	
소계		2필지		472,724	2		
6	점곡 동변	산109	임	472,724	2	의성군	
		1248	구	833	127	국(농림축산 식품부)	
소계		2필지		48,596	302		
7	점곡 명고	산69-1	임	48,596	302	이인재	
		산69-4	도	108	10	경상북도	
소계		3필지		595	264		
8	점곡 윤암	산141-1	구	595	264	국(건설교통부)	
		산142	임	139,128	645	박은미 외 1	동의완료
		1180	구	182	8	국(농림축산 식품부)	

연번	면 리	지 적 공 부			편입면적 (㎡)	소유자	검토의견
		지번	지목	면적(㎡)			
소계		9필지		38,638	96		
9	안평 신월	1261	구	38,638	96	국(농수산부)	
		1264	도	10,102	47	국(건설부)	
		850	대	248	11	이우운	동의완료
		842	전	450	67	정태근	동의완료
		841	전	228	29	정태근	동의완료
		840	임	159	61	정태근	동의완료
		산179-1	임	50,794	51	김철봉외 2	동의완료
		산178-1	구	595	42	국 (건설교통부)	
		산178	임	21,514	22	정태수 외 2 (나주정씨 신월문중)	동의완료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3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054-778-389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 내역서

소재지					지목	지 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계				16필지		233,340	1,997					
영천계				8필지		116,497	653					
영천		화남	구전	산36	임야	13,884	47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구전로 557-86	황보득 (황보당의 아들)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남로 40, 702동 404호 (도원동, 산새마을)	황보건윤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산53-1	임야	58,571	36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6길 12, 아이파크 더샵 112동 1301호 202동 303호 (우방신천지 타운)	황보정훈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산53-2	임야	37,289	364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구전로 557-86	황보득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산98	구거	1,819	41		건설 교통부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산117	구거	2,877	45		농림축산 식품부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833	하천	225	15	경상북도 영천시 무궁화길 33-24	서정필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영천		화남	구전	837	답	664	70	경상북도 영천시 무궁화길 33-24	서정필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영천		화남	구전	950	구거	1,168	35		농림축산 식품부	계류보전 보완	8차	잔액
청도계				7필지		40,291	976					
청도		금천	김전	산181	임야	9,124	39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시장1길 68-12(대명동)	엄득이 (최종태의 배우자)	사방댐 설치	8차	
청도		금천	김전	1272	임야	123	42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 (구유동)	김영철	사방댐 설치	8차	
청도		금천	김전	1274	임야	1,914	20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 (구유동)	김영철	사방댐 설치	8차	
청도		금천	김전	1435	하천	19,231	229		국토 교통부	사방댐 설치	8차	
청도		매전	하평	산22-2	임야	510	72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모은정길 3	이경동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3281-47	석현만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3281-47	석현태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151, 하평리모은정	이경동 (마을부락 대표)	계류보전	8차	잔액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종류	비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청도		매전	하평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모은정길 27	곽동기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24, 동아무지개1차 103동 305호	나채옥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중앙로52, 5동 907호 (구서동, 우성아파트)	곽동기 (곽윤섭의 삼촌)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3281-47	석현만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548	임야	3,068	190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 3281-47	석현태	계류보전	8차	잔액
청도		매전	하평	1311	구거	6,321	384		농림축산 식품부	계류보전	8차	잔액
울진계				1필지		76,552	368					
울진		북	검성	산22	임야	76,552	368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검성로 574	엄기현	사방댐 설치	8차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4호

2026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경상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생활임금 결정금액 : 시급 12,049원

- 월 환산액 : 2,518,241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도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적용 제외

3.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5호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대상사업 : 2023년 ~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2. 지적재조사지구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

- 1) 하양 금락2지구(2023년) :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1번지 일원
- (당초) 2023.11.01. ~ 2025.10.31. → (변경) 2023.11.01. ~ 2025.12.31.
- 2) 용상1지구(2024년) : 안동시 용상동 986-6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12.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3) 정산3지구(2024년) :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358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12.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4) 용기2지구(2024년) :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772-1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06.30.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5) 신원1지구(2024년) :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30-1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12.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6) 발리1지구(2024년) :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299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12.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7) 예리1지구(2024년) : 고령군 덕곡면 예리 159-2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12.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8) 고산2지구(2024년) :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 52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06.30.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9) 대죽지구(2024년) :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159-10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06.30.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0) 무이지구(2024년) :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494번지 일원

- (당초) 2024.01.01. ~ 2025.12.31. → (변경) 2024.01.01. ~ 2026.06.30.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1) 석포2지구(2025년) :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82-2번지 일원

- (당초) 2024.02.01. ~ 2026.02.28. → (변경) 2024.02.01. ~ 2026.12.31.
- 변경사유 : 2024년 국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

나. 대상필지 또는 대상면적 변경

1)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 지구별 변경 현황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고령군	고령군수	포리1지구 (고령군 우곡면 포리 694번지 일원)	당초	90	42,485	45	86.7	88.5
			변경	92	42,978.4	44	86.4	88.7

- 변경사유

(고령군 포리1지구) 필지 추가 편입에 따른 필지 수·면적 변경

2) 2024년 지적재조사업

- 지구별 변경 현황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경주시	경주시장	감포 전촌지구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1번지 일원)	당초	71	48,361	28	67.9	86.1
			변경	72	44,180	28	67.9	86.1
김천시	김천시장	남면초곡지구 (남면 초곡리 133번지 일원)	당초	310	138,514	154	71.7	78.4
			변경	318	138,179	157	71.6	78.4
안동시	안동시장	정산3지구 (예안면 정산리 358번지 일원)	당초	841	676,404	295	73.4	79.6
			변경	840	676,404	295	73.4	79.6
영양군	영양군수	발리1지구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299번지 일원)	당초	301	178,949	107	90.7	84.1
			변경	271	169,811	98	89.1	81.8

- 변경사유

(경주시 전촌지구) 지구계 조정에 따른 필지 수·면적 변경

(김천시 남면초곡지구) 지구계 변경 및 지구계 분할에 따른 필지 수·면적 변경

(안동시 정산3지구)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필지 수 변경

(영양군 발리1지구) 필지 추가 편입에 따른 필지 수·면적 변경

3) 2025년 지적재조사업

- 지구별 변경 현황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김천시	김천시장	감문태촌지구 (감문면 태촌리 720-1번지 일원)	당 초	154	87,186	102	71.6	83.1
			변 경	154	94,243	102	74.1	83.8
김천시	김천시장	어모능치지구 (어모면 능치리 1056-1번지 일원)	당 초	29	171,682	5	100	100
			변 경	32	182,118	5	100	100
김천시	김천시장	감천광기지구 (감천면 광기리 95번지 일원)	당 초	257	145,402	118	73	83.5
			변 경	258	145,412	119	75.2	85
안동시	안동시장	신덕지구 (임하면 신덕리 131-1번지 일원)	당 초	328	185,394	144	74.8	81.9
			변 경	355	219,636	153	73	76.2
안동시	안동시장	외하지구 (남선면 외하리 287번지 일원)	당 초	307	175,819	124	75.9	87.9
			변 경	312	177,208	126	74.5	87.2
안동시	안동시장	녹전원천지구 (녹전면 원천리 111-2번지 일원)	당 초	512	559,516	143	75.9	91.7
			변 경	544	583,402	145	75.6	91.2
문경시	문경시장	유곡지구 (유곡동 139번지 일원)	당 초	490	203,592	217	70.9	81.4
			변 경	506	173,006	221	69.5	77.5
문경시	문경시장	우지지구 (우지동 7-3번지 일원)	당 초	378	377,366	169	67.1	80.4
			변 경	381	377,896	169	67.1	80.2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문경시	문경시장	산양 위만지구 (위만리 3-8번지 일원)	당 초	126	115,753	56	72.0	80.2
			변 경	135	105,021	58	69.2	74.0
경산시	경산시장	하양 교리지구 (하양읍 교리 1번지 일원)	당 초	362	175,275	176	73.2	83.4
			변 경	366	175,588	176	73.3	83.6
경산시	경산시장	용성 미산지구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1번지 일원)	당 초	614	261,237	261	73.8	82.9
			변 경	618	263,726	261	74.1	82.3
청송군	청송군수	주산지1지구 (주왕산면 주산리 559-1번지 일원)	당 초	460	366,781	166	83.8	92.8
			변 경	460	367,046	166	83.8	92.8
청송군	청송군수	신기1지구 (파천면 신기리 467-1번지 일원)	당 초	461	347,666	191	79	91.6
			변 경	459	348,262	191	79	91.6
고령군	고령군수	관동지구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236번지 일원)	당 초	276	126,563	128	78.1	87.2
			변 경	278	118,717	128	78.9	86.5
고령군	고령군수	예리2지구 (고령군 덕곡면 예리 523-2번지 일원)	당 초	70	25,712	34	94.1	96.5
			변 경	76	28,004	36	88.9	90.3
고령군	고령군수	유리1지구 (고령군 운수면 유리 24-1번지 일원)	당 초	200	62,749	107	77.6	78.7
			변 경	200	62,734	111	76.6	78.7
고령군	고령군수	양전1지구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405번지 일원)	당 초	163	68,534	97	72	86.6
			변 경	164	68,600	98	72.3	86.6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고령군	고령군수	귀원1지구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77번지 일원)	당 초	188	53,678	83	72.7	79.6
			변 경	180	53,809	83	72.7	79.7
고령군	고령군수	운산1지구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 25-1번지 일원)	당 초	46	11,606	29	86.2	78
			변 경	51	11,674	29	86.2	78.1
성주군	성주군수	백운2지구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974번지 일원)	당 초	364	169,622	132	68.1	79.8
			변 경	367	170,813	135	68.6	79.9
성주군	성주군수	용성1지구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688번지 일원)	당 초	171	48,241	73	71.6	70.6
			변 경	171	48,235	73	71.6	70.6
성주군	성주군수	용성2지구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402-1번지 일원)	당 초	98	55,529	39	72.7	78.4
			변 경	97	54,401	35	71.9	76.1
성주군	성주군수	운정1지구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260-1번지 일원)	당 초	183	85,304	102	75	82.9
			변 경	184	84,625	102	75	82.9
성주군	성주군수	운정2지구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48번지 일원)	당 초	153	69,876	85	74	80.9
			변 경	155	70,938	86	74.3	81.3
성주군	성주군수	유서1지구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14번지 일원)	당 초	145	104,044	73	72.1	81.5
			변 경	147	104,182	73	72.1	81.5
성주군	성주군수	장산1지구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89-1번지 일원)	당 초	385	200,634	197	70.9	80.2
			변 경	387	201,113	197	70.9	80.2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예천군	예천군수	고산3지구 (풍양면 고산리 377번지 일원)	당 초	47	27,200	28	68.4	70.7
			변 경	47	26,440	27	66.7	69.6
예천군	예천군수	백전5지구 (예천읍 예천읍 백전리 73-2번지 일원)	당 초	365	106,027	218	69.2	75.1
			변 경	360	103,074	220	68.6	68.9
예천군	예천군수	서본4지구 (예천읍 서본리 5-19번지 일원)	당 초	359	157,202	201	68.6	71.5
			변 경	363	157,040	201	67.9	67.3
봉화군	봉화군수	석포2지구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84-2번지 일원)	당 초	211	48,220	104	73.7	78
			변 경	227	51,454	105	71.9	76.7
봉화군	봉화군수	의양10지구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13-10번지 일원)	당 초	238	85,925	86	67.5	86.6
			변 경	240	82,934	87	67.1	86
봉화군	봉화군수	오록1지구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297-1번지 일원)	당 초	288	113,470	120	71.1	74.8
			변 경	290	98,104	120	71.1	70.5
울진군	울진군수	연지지구 (울진군 매화면 연지리 1번지 일원)	당 초	238	86,213	123	79.5	74.1
			변 경	240	86,212	123	79.5	74.1
울진군	울진군수	오산지구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1번지 일원)	당 초	685	301,135	325	70	82.7
			변 경	694	315,448.6	326	69.8	82.7

- 변경사유

(김천시 감문태촌지구, 어모능치지구, 감천광기지구) 지구계 변경 및 지구계 분할에 따른 필지 수·면적 변경

(안동시 신덕지구, 외하지구, 녹전원천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필지 추가·제외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문경시 유곡지구, 우지지구, 산양 위만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필지 추가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경산시 하양 교리지구, 용성 미산지구) 지구계 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인접 필지 추가에 따른 필지 수 및 면적 변경

(청송군 주산지1지구, 신기1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합병에 따른 필지 수·면적 변경

(고령군 관동지구, 예리2지구, 유리1지구, 양전1지구, 귀원1지구, 운산1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필지 추가·제외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성주군 백운2지구, 용성1,2지구, 운정1,2지구, 유서1지구, 장산1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필지 추가·제외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예천군 고산3지구, 백전5지구, 서본4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필지 추가·제외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봉화군 석포2지구, 의양10지구, 오록1지구) 지구계 분할 및 필지 추가·제외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울진군 연지지구, 오산지구) 토지이동(등록사항정정, 분할)으로 인한 필지 수·면적 변경

3. 변경 일 : 2025. 9. 25.

4. 관계서류 열람장소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 (054)-880-4055
- 경 주 시 토지정보과 ☎ (054)-779-6977
- 김 천 시 열린민원과 ☎ (054)-420-6978
- 안 동 시 토지정보과 ☎ (054)-840-5069
- 문 경 시 종합민원과 ☎ (054)-550-6784
- 경 산 시 토지정보과 ☎ (053)-810-5757
- 의 성 군 민 원 과 ☎ (054)-830-6367
- 청 송 군 종합민원과 ☎ (054)-870-6397
- 영 양 군 종합민원과 ☎ (054)-680-6801
- 고 령 군 민 원 과 ☎ (054)-950-6392
- 성 주 군 민 원 과 ☎ (054)-930-6833
- 예 천 군 종합민원과 ☎ (054)-650-6925
- 봉 화 군 종합민원실 ☎ (054)-679-6162
- 울 진 군 열린민원과 ☎ (054)-789-6677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5-37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09. 25.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당초	지방하천 (백운천)	교 량 재가설	〈복전1교〉 L=65.4m, B=12.0m (영구 1,407㎡) (일시 1,020㎡)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211-2번지 외 12필지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김천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6.12.31.
변경			〈복전1교〉 L=65.4m, B=12.0m (영구 1,768㎡) (일시 1,182㎡)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211-2번지 외 19필지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6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명 칭 (대표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자 본 금	주영업소 소재지
한맥개발 주식회사 (임기주)	2025. 9. 22.	경북250002	10,390,000천원	경북 예천군 호명읍 한맥골프장길 72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67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같은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업 체 명 : (주)영진글로벌
2. 대 표 자 : 최은영, 최예진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682-2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
5. 지 정 번 호 : 제 수 - 30호
6. 지 정 일 자 : 2025. 9. 22.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70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청문사유	법적근거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정철오)	건축공사업 (03-092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동해대로 4351, 비동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주식회사 태상건설 (김중권)	건축공사업 (13-078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46-33, 1층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보완 미이행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2. 열람·확인 기간 : 2025. 9. 25. ~ 2025. 10. 10.

3. 열람·확인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4. 안내사항

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문서 또는 구술로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5-1971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규제특례 적용(안)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하여 추가 규제특례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자인은 기간 내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1-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개념) 4년간(2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 (대상규제) 지역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1-2.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 신청
- (신청기관) 대구·경북 지역협업위원회
- (전담기관) 경북대학교(글로벌대학팀)
- (참여대학) 경북대학교 등 대구·경북지역 소재 12개 대학
 - * 경북대학교 등 대구 지역 소재 10개 대학, 국립경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 (변경지정 필요성) 대구·경북 지역은 2025. 3. 1. ~ 2030. 2. 28. (4년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추가 규제 특례(안)을 통해 지역 내 미래산업 분야의 고등교육 수행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함

IV. 규제특례 요청사항 및 운영계획

1. 규제특례 요청사항

1-1. 개요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교육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기간	적용대상
1	「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비전임교원 정년기간(65세) 완화	대학 경영	- 우수연구자 초빙을 위한 비전임교원의 정년기준 (65세)예외 적용	2025. 3. 1. ~ 2029. 2. 28.	경북대학교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1항 단일교지 기준 완화	대학 경영	-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	2025. 3. 1. ~ 2029. 2. 28.	경북대학교
				2026. 1. 1. ~ 2029. 12. 31.	영남이공 대학교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2025. 9. 1. ~ 2034. 2. 28.	대구한의 대학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외국인 학생 비자발급 기준 완화	외국인 체류 비자	- 외국인 학생 비자발급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대상 완화	2025. 3. 1. ~ 2029. 2. 28.	경북대학교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3호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대학 경영	- 실습기관이 공공기관 및 출연연, 지역 중소기업일 경우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 *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의 25% → 50% 이내	2025. 3. 1. ~ 2029. 2. 28.	대구지역 지역혁신 사업 추진대학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교육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기간	적용대상
5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7조제1항	학사 운영 (편입학)	- 대구형계약학과 편입생(3학년)본교 일반학과 재학생에서 계약학과로 전과허용 (정원 내·외 전과) ※ 계약학과의 설립취지, 산업체와의 협약 조건,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전과 불가능(유권해석-계약 학과 운영지원센터)	2025. 3. 1. ~ 2029. 2. 28.	경북대학교
6	「고등교육법」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학사 운영	- 이동수업의 대상 및 협동 수업 취득학점에 대한 제한 완화	2026. 1. 1. ~ 2029. 12. 31.	영남이공 대학교
7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학사 운영	-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허가 제한 완화	2026. 1. 1. ~ 2029. 12. 31.	영남이공 대학교
8	「고등교육법」 제35조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학사 운영	- 일반대와 전문대학이 통합한 대학은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2027. 3. 1. ~ 2031. 2. 28.	국립경국 대학교
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학사 운영	-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겸임교원 등과 동일하게 주당 9시간 이하(최대 12시간) 적용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교육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기간	적용대상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 통합대학 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정원의 학사학위과정 편입학 허용	학생 정원	- 통합 대학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전문학사학위 취득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정원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	2027. 3. 1. ~ 2031. 2. 28.	국립경국 대학교
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국·공립대학 통합의 경우 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전보 제한 완화	대학 경영	- 통합대학에 한해 공무원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보를 허용	2026. 3. 1. ~ 2030. 2. 28.	국립경국 대학교
12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 예외 사항으로, 재직 교직원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지급	대학 경영	- 글로벌대학 사업기간 동안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의 경우 글로벌대학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한시적 수정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13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계약학과 이동수업 규제 완화	학사 운영	- 대학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여 계약학과 이동수업 규제 완화	2027. 3. 1. ~ 2031. 2. 28.	국립경국 대학교
1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적용을 완화하여, 국외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가공무원 파견 제도 유연화	대학 경영	- 대학의 장에게 소속 국가 공무원의 해외근무 임용권 허용 및 국외 교육시설 근무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소요액을 글로벌사업비로 지원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교육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기간	적용대상
15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제2장의 4번을 완화하여, 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시 재정입증서류 완화	대학 경영	- 글로벌대학에 대한 규제 특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관련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국제화역량 인증제 받은 대학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 시 C학점 미만일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800만원에서 400만원(한화 1,600만원의 1/4 완화)으로 제출 허용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16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의 인증 평가지표 완화	대학 경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지표에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 완화	2025. 9. 1. ~ 2029. 8. 31.	국립경국 대학교

1-2. 규제특례 요청사항(세부내용)

1-2-1 「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제특례(비전임교원의 정년기간(65세)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 국립대 비전임교원 정년은 전임교원과 동일한 65세 적용, 정년제한으로 자율적 초빙을 통한 역량 활용 불가
- 글로벌대학 현장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체 전문가 비전임교원 활용이 필요하나 교육공무원 정년기준(65세) 제한으로 경륜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약
- 학문분야별 우수 교원으로 검증이 된 비전임교원의 경우 정년 연장을 통한 연구지속 성과 기대 및 연구력 향상 독려 필요
- 비전임교원의 정년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연구자 초빙

나.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 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법으로 초빙교원의 정년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함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 제1항·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14조2(강사) :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한 법으로 강사 및 초빙교원 등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법으로 강사의 임용에 관한 법으로 교원의 정년(65세)을 명시하고 있어 연구력 또는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경력이 풍부한 우수인재 영입에 제한

-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의 정년 65세 제한을 완화하여 정년이 지난 우수연구자를 비전임교원으로 채용

- 교육 및 연구 경력이 풍부한 우수연구자에 대하여 총장이 타대학 전임교원 경력이 있거나 검증된 비전임교원의 경우 대학교원의 정년기준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경북대학교	비전임교원(검증된 인사의 경우) 정년기준 예외 적용	경북대학교	‘25.3.1.~’29.2.28.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25.9.1.~’29.8.31.

라. 기관별 특례 적용 방안

고등교육기관	규제 특례	적용 방안
경북대학교	비전임교원(검증된 인사의 경우) 정년 기준(65세) 예외 부여	• 3대 융합연구원 원장 채용 시 교육 및 연구 경력이 풍부한 우수연구자를 초빙하기 위해 비전임 석좌교수에 한해 정년기준 예외 적용 • 3대 융합연구원에 산업체, 출연연 등 시니어 전문인력이 비전임 JA 교수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기준 예외 적용 • 학교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공정한 임용절차를 마련하고 재직기간 상한 및 재직기간 예외를 적용하여 우수한 산학연 비전임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립경국대학교	비전임교원(검증된 인사의 경우) 정년 기준(65세) 예외 부여	• 우수연구자 초빙 등을 위하여 비전임 교원의 경우 정년 기준 예외 적용 • 규제특례 적용 시 「국립경국대학교 학칙」 개정 ※ 학칙 및 규정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대상에 일정 이상의 산업체 재직경력 및 재직기간 상한 등 명시 예정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비전임교원의 정년 완화는 우수연구자를 대학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 인재유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연구력 향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비전임교원에 한해 정년기준 예외를 적용하여 교육 및 연구경력이 풍부한 우수연구자가 정년과 관계없이 대학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함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정년과 관계없이 경력이 풍부한 우수연구자를 초빙하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라.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이미 부산지역 4개 대학, 광주·전남지역 2개 대학, 충북지역 2개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의 정년완화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이 조건부수용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대학교원에 대한 정년이 규제되어 있어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정년을 마친 교원에 대하여 비정년 교원으로 임용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무분별한 정년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인 ‘우수교원 또는 검증된 비전임교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 등 규정을 마련하여 대응
- 전임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자가 유입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유지

1-2-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규제 특례(단일교지 기준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

나. 규제 현황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 : 학교 소유가 아닌 교사 및 교지 확보의 경우 20km 범위 내와 대학 본교소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음
- (공통) 이로 인해 해당 임차시설에 대한 임차료, 기자재 구입비 등은 집행 가능하나, 임차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된 항목은 집행 불가

- (국립경국대) 해외 캠퍼스(거점센터) 및 지역캠퍼스 기반 프로젝트 수업, 다양한 수업 형태(2+2) 및 비교과 활동을 위한 교사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교사가 아닌 관계로 교육과정 활동 및 사업비 지출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대구한의대) 노마드캠퍼스 기반 프로젝트 수업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위한 교사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교사가 아닌 관계로 사업비 지출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 노마드캠퍼스 : 국내캠퍼스(영덕, 청도), 해외캠퍼스(거점센터)
- (대구한의대) 교육부고시 제2025-217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서」에 지정된 【대구한의대(영덕캠퍼스, 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 / 청도캠퍼스 청도평생학습행복관)】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임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V		V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경북대) 대구시 및 산학협력단 소유 공간을 활용한 현장수요 맞춤형 첨단산학협력 micro 캠퍼스 조성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로써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의 제약 요건(국내 캠퍼스의 경우 교사 및 토지의 경우 20km 범위 및 해당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 미적용(단일교지 기준 완화)
- (영남이공대) 산업체와 연계하여 개발된 교육과정 운영 또는 일학습병행 기반의 산업체 교육과정 운영인 경우 산업체 인근지역(동일 생활권인 경북지역 내)까지 임차한 토지 및 건축물을 교지와 교사로 인정
- (국립경국대) 지역캠퍼스 2+2 학사학위 과정 운영 및 해외 캠퍼스 기반으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업형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에 제약 요건 예외(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캠퍼스 구축과 해외캠퍼스의 경우 20km이내 및 지방자치단체 내 요건 예외 적용) 적용하여 임대한 해외 시설을 교사로 인정하여 해당 시설에 내설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및 자산성 지출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청
- (대구한의대) 국내 및 해외 캠퍼스 기반으로 프로젝트 다양한 수업형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에 제약 요건 예외(지역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로컬캠퍼스구축과 해외캠퍼스의 경우 20km이내 및 지방자치단체 내 요건 예외 적용) 적용하여 임대한 해외 시설을 교사로 인정하여 해당 시설에 특화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및 자산성 지출을 투입 가능여부 확대
- 교육부고시 제2025-217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서」에 지정된 지역 교지 외 추가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교지 지정

- 영덕캠퍼스 : (기지정) 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
(추 가)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영덕군 영해면 예주8길 일원)
- 청도캠퍼스 : (기지정) 청도평생학습행복관
(추 가) 청도상상마루(청도군 청도읍 청화로205 일원)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경북대학교	해당 캠퍼스에 한해 단일교지로 인정 (신서혁신도시, 수성알파시티, 군위 첨단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전체학과	‘25.3.1.~’29.2.28.
영남이공 대학교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산업체 인근지역(동일 생활권인 경북지역 내)의 임차한 토지, 건축물을 단일교지로 인정	이동수업, 협동수업 등 학교 밖 수업 운영 학과	‘26.1.1.~’29.12.31.
국립경국 대학교	임대한 지역캠퍼스 및 해외캠퍼스도 교지, 교사로 인정	전체학과	‘25.9.1.~’29.8.31.
대구한의 대학교	임대한 국내외 캠퍼스(부대시설 등)도 교지, 교사로 인정	전체학과	‘25.9.1.~’34.2.28.

라. 기관별 특례 적용 방안

(경북대학교)

-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신도시 및 기업 집적지 현장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허브역할을 하는 micro 캠퍼스 조성·운영

-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술사업화, 창업 등을 통합 지원하는 특화캠퍼스와 현장 수요 맞춤 기업 혁신을 지원하여 산학협력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캠퍼스를 운영함
- micro 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국내 대학의 국고 등 비등록금 회계를 사용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함

(영남이공대학교)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시 산업체 인근지역(경북지역까지)의 임차한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교지, 교사로 인정

(국립경국대학교)

- 대학의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역캠퍼스 및 해외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
- 대학교 및 지자체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프로젝트형 수업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사로 활용
- 대학교 및 해외 기관을 활용하여 글로벌 프로젝트형 수업 수행과 외국인 유학생 및 현지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장으로 활용
- 해외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 대학의 국고 등 비등록금 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캠퍼스 구축 재원은 지방비 등 균형적인 대학 재정을 사용하여 교육의 경쟁력 제고

(대구한의대학교)

- 대학의 특성화 분야 학과를 로컬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함

- 사업의 목표인 다양한 지역정주형 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로 활용
- 지자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된 로컬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정주형 우수인재가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교육장으로 인정함
- 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대학의 비등록금 회계를 사용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함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국내 많은 대학이 신도시 및 기업집적지 현장에 캠퍼스 구축을 희망하지만 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학의 우수한 전문인프라 구축 및 현장캠퍼스 조성에 큰 장벽이 됨
- 국내캠퍼스의 교지 최단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공간계획 및 산업혁신 전략에 따른 현장맞춤 micro 캠퍼스 조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제한으로 인한 맞춤형 캠퍼스 조성 제한은 수요 맞춤형 현장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의 지대한 현장수요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micro 글로벌 현장에 대한 경험의 부족은 글로벌화된 국내 기업의 여건상 학생취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지역내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편중과 교육장 부족으로 지역의 특화분야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산학연 연계 활용에 있어 제한적으로 활용됨
- 다양한 창업, 취업, 현장학습 등에 대한 경험의 부족은 졸업생 글로벌화된 국내 기업의 여건상 학생취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교지경계선 완화
 - 신속하게 국내 대학이 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신도시 및 기업 집적지 현장의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의 특성화분야에 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분교 등) 장벽으로 인하여 국내 대학이 국외 분교를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 필요
 - 이런 관계로 분교 설립이 아닌 교지 및 교사 인정 조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국내 대학이 해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교지 및 교사 인정 조건을 완화
 -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체계 확립과 지역정주형 교육을 위한 지역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의 특성화분야 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과 지역인재 발굴에 이바지
- 교육진행 및 문제발생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교육거점 확보
 - 대학본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교사, 교지 확보를 통하여 장거리에서의 교육 진행으로 학생-대학간의 소통부재 발생요건 최소화(교육에 따른 학생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 등이 대학에 지속적인 피드백)
- 앞서 지정된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와 연계된 로컬캠퍼스는 로컬캠퍼스 건물로만 지정되어 있어, 지역의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의 편중현상과 편의를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부대시설과 연계한 캠퍼스시설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정주형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

-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 : 지역정주형 RC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연계 활동 등
- 청도상상마루 : 미니창업혁신파크 및 지역맞춤형 취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연계 활동 등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신도시 및 기업집적지 현장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허브역할을 하는 micro 캠퍼스 조성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인력약성 및 산학연계형 교육연구 체계를 정착하고자 함
-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의 전문인프라 구축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재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글로벌 교육을 실시
 - 현장캠퍼스 운영에 필수적인 강의실·실습실 등 교육공간, 휴게실 등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산학연 협업의 현장수요 맞춤형 협업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업 허브로 특화된 micro 캠퍼스 조성·운영
 -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의 혁신을 책임지는 거점대학의 역할 제고 및 산학연계형 교육연구 체계를 정착
- 성인학습자의 교육 편의성 증대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에 기여
- 해외캠퍼스를 통해 재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글로벌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고등학생 포함)대상 선진 교육 실시로 지역대학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 기대

- 해외캠퍼스 기반 글로벌 교육을 통해 졸업생의 글로벌 역량 제고와 취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및 해외캠퍼스에 본교 캠퍼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확대
- 지역주민(지역 고등학생 포함)대상 대학교육(대학특화분야 교육, 현장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 실시로 지역대학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 기대
- 다양한 특화분야 수업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정주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확대 모색

라.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대구한의대(영덕캠퍼스, 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청도캠퍼스, 청도평생학습행복관), 한동대(경주캠퍼스, 영덕캠퍼스, 울릉캠퍼스)에 한해 단일 교지 기준 완화 특례 부여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기업집적지와 연계한 특화캠퍼스와 현장수요 맞춤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현장캠퍼스 위주의 운영예산의 과다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 있음
- 특히, 국고지원의 경우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산업육성전략과 연계한 신도시 및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대학의 재원을 활용할 경우 비등록금회계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지출 범위에 있어서도 교육 목적에 부합한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철저히 관리가 필요함
-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선도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의 혁신을 책임지는 거점대학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학 연구캠퍼스와 mico 캠퍼스의 유기적 연계는 산학연계형 체제를 정착시키고, 국내 대학의 특화분야에 성과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 내실있는 지역정주형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적 우수성과를 달성하여 제도 완화로 인한 우려점을 해소하고 대학의 특화분야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연계 활성화 성과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대학의 학생 유치 수단으로 무분별한 캠퍼스 확대에 대한 우려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글로벌대학 사업계획내용에 포함된 요소를 주요 골자로 한 캠퍼스에 한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지자체-지역산업체 연계 지역 특화캠퍼스
 - 지산학연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캠퍼스 운영

1-2-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규제 특례(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대상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연구프로그램 참여학생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C-3-1(단기체류) 또는 D-2-5(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함
- D-2-5(장기체류) 비자는 연구과정 비자로 합법적이고 연구참여에 적합한 비자이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여 학사 및 석사과정 재학생은 비자 발급대상이 아님
- 이에 학사 및 석사과정 재학생은 C-3-1(단기체류) 비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가 적합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음

나. 규제 현황

- 특정 연구과정(D-2-5) :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본 대학 학사과정 재학 중인 사람도 허용
 - THE(Times Higher Education) 선정 200대 또는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500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연구과정 유학생(D-2-5)을 초청하는 경우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글로벌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법무부 사증발급 매뉴얼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예외 조항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D-2-5) 인정’ 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으로 개정 필요
- 현재 특정 연구과정(D-2-5)비자 발급 기준(THE선정 200위 이내 또는 QS선정 500위 이내)을 충족하는 국립대학교는 없는 상황으로 4년간 (2025. 3. 1. ~ 2029. 2. 28.)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운영 필요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경북대학교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확대	대학에서 초청하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생	‘25.3.1.~’29.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본 대학 소속 외국인 우수 학사과정생을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인턴십 사업에 한해 비자 규정 완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현황) 연구 유학생(D-2-5)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 THE세계대학 평가 200위 또는 QS세계대학 평가 500위 이내 국내대학 중 이공계 분야에 한하여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현재 국내 대학교 중 세계대학평가기준(THE 200위 이내, QS 500위 이내)을 충족하는 대학은 20개 내외로 약 10%의 대학만 국외 학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연구 유학생 비자(D-2-5) 발급이 가능함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경북대학교 글로벌대학 혁신실행 계획에 의해 해외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원 진학, 지역기업 취업 등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국가間 경계 없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 법령으로 인해 외국인 연구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므로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되어야 함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

라.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현재 4대 과기원(KAIST, DGIST, UNIST, GIST)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D-2-5 발급이 원활하여 외국인 연구참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임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비자 기준에 충족하는 특정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및 세계대학평가(THE, QS) 상위 대학에서 기존 기준 유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 대학 글로컬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 대학원생 유치 목표 달성 및 대학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연구 유학생(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필요

*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 경북대학교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 ‘1-3-1-다. 우수 학부생 진학 유도 프로그램 강화’

1-2-4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3호의 규제특례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 비율 상향)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75%이며, 나머지 25%는 정부부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월 13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하나, 이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최소 기준인 최저임금액의 75%(1,572,202원)에 미치지 못하여 실습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 마찬가지로 지역의 중소기업도 실습지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실습 기관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 이에,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규제 현황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제30조 제5항 제3호 : 실습지원비는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 각 정부부처 등은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25%까지 실습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V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5항3호에 의하면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는 대학에서 운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25% 수준으로 정하고 있음
- 기업의 실습생 임금 및 교육 수행 부담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유인이 부족하며, 현장실습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3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하나, 이는 최저임금의 75%인 1,572,202원 보다 적기 때문에 전공분야 공공기관 또는 출연연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부생들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임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의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출연연에 대해 재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정부부처 등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 상한 미적용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지역 중소기업, 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출연연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75%) 미적용	경북대, 계명대,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수성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 대구교육대	‘25.3.1.~’29.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출연연이 실습지원비 요청 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과 각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지원비와의 차액을 지원하되, 최저임금의 50%까지 지원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지역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매칭을 통한 청년취업률 증가 및 우수인재의 지역 정주율 향상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강화
-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 학생의 현장 직무능력 향상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실습비 기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학부생 인건비 기준 차이로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학부생을 실습생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실습지원비 지원금액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
- 기업체 실습지원비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 참여 확대로 교육혁신 촉진, 학생들의 다양한 실무 경험 제공 등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한 인재의 지역 정주율 향상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경험을 쌓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유출 방지
- (학생 실무 경험 제공) 지역 기업과의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취업 기회도 제공받음으로 인재의 지역 정주율 향상

라.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울산·경남)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등 7개교
- (광주·전남)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

※ 현장실습 학교 지원비 확대(25% → 50%) 특례 운영 중

1-2-5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제1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제 특례 (일반학과에서 계약학과로 전과허용(정원 내·외 전과))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편입학(3학년) 신설 계약학과에 일반학과에서 전과 불가능은 계약학과의 설립 취지, 산업체와의 협약 조건,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에 기반한 유권해석(계약학과 운영지원센터)에 따른 내용으로 신청
- 기존 일반학과 재학생이 신설된 계약학과로 전과 이동을 통해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선택과 자율권 부여 필요

나. 규제 현황 (유권해석)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제1항(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V	

- 학사 운영에 따른 일반학과에서 계약학과로 전과 불가능으로 인한 허용 요청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글로벌대학 사업의 추진과제로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해결 등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지역기업과 취업약정에 의한 신설 대구형 계약학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본교 학생의 전과 허용 요청
- 글로벌대학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2025. 3. 1.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9. 2. 28.까지 규제특례를 적용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경북대학교	일반학과에서 계약학과로 전과 허용	대구형 계약학과 편입생	‘25. 3. 1~’29.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학과간 전과 허용으로 지역 정착 및 인재양성을 위한 대구형 계약학과와 학생 모집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정원내 입학한 학생이 해당 학과에 적응을 못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과가 불가능하여 중도탈락률 증가
- 학생 수요 변화와 산업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곤란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학생의 학업적 흥미, 역량 변화 및 진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학사 유연성 필요(학생의 경로 수정 가능성 고려 필요)
-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함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전과 허용으로 인해 학업 만족도 제고 및 자율적 학사 운영, 정원 탄력 운용 가능
- 대학 내 유휴정원 활용으로 교육 자원 최적화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정원 내 → 정원 외 전환 또는 변경 문제의 쟁점이 생길 수 있음
(정원 중복 및 교육부 정원규제 위반 우려)
-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정원 내·외 전과 인정 규제특례 신청으로
기준 유예 요청

1-2-6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의 규제특례(이동수업 및 협동수업 제한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시스템 변화에 따른 법령 개선

나. 규제 현황

- 2024년 4월 시행된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이동수업’은 대상이 장애인, 국가대표, 실습학기제 참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고, ‘협동수업’은 취득할 수 있는 학점 등에 제한이 있음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이동수업의 대상에 대하여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제한을 완화
- 협동수업에 대한 취득학점 제한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완화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영남이공대학교	이동수업의 대상에 대한 제한 완화 및 협동수업에 대한 취득학점 제한 완화	이동수업, 협동수업 등 학교 밖 수업 운영 학과	‘26.1.1.~’29.12.31.

라. 특례 적용 방안

- 이동수업의 대상에 대하여 금지되는 대상(유형주점, 위험시설 등)만 명시
- 협동수업에 대한 취득학점 제한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완화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산업단지 또는 산업체 내에 현장캠퍼스를 운영하거나 원격지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현장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수업 진행 시 물리적 애로사항 발생
-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의 제약으로 산업체와의 적극적 협력 불가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모델 변화에 부응하는 이동수업, 협동수업의 규정 개선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성인학습자의 교육 편의성 증대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에 기여

라.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대구·경북)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수업 관리에 대한 엄정성에 대한 쟁점 발생 예상
- 전자출결 시스템 등 학사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1-2-7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규제특례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 학령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증대로 인한 법령 개선

나. 규제 현황

- 현행법상 D-2소지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제 취업시간을 제한적으로 허용(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하고 있음
-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성적 우수자* 또는 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함

* 직전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D-2소지자 중 평균학점 3.0(B학점)이상의 학생에게 주30시간 이내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영남이공대학교	D-2소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 시간 규제 완화 (주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	외국인 유학생 운영 학과	'26.1.1.~'29.12.31.

라. 특례 적용 방안

- D-2 소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 시간 확대
 - 평균학점 B학점 이상 학생에 한하여 시간 확대(주 30시간)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 영향분석

-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선호성향이 매우 강하므로 경제적 욕구 미충족 시 중도이탈 현상의 증가 및 수도권 집중 현상 발생

나. 규제특례의 필요성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다.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외국인 청년인재가 지역 발전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주 유도과 대학-지역의 상생 제고

(4) 예상쟁점 및 대응 방안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쟁점 발생 예상
- 평균학점 3.0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규제 완화

1-2-8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제특례(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관련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일반대와 전문대학이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다만, 「지방대육성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규제특례는 4+2년까지 적용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국립경국대학교	‘27.3.1.~’31.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통합대학 전 전문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특성에 따라 차별성 있게 전문학사 학위 수여를 허용하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체계 마련

- 규제특례 적용 시 「국립경국대학교 학칙」개정을 통해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 병행 운영하도록 개정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통합대학 이전 전문대학에서 운영해 온 2~3년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연한 학위 운영 체계 마련
- 지역 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수요와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운영하려면 전문학사 학위 수여에 대한 법령상 특례 필요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다양한 학습자에게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진로의 선택권을 확대

다.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광주·전남)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 (전북)원광대-원광보건대
- (울산·경남)창원대

1-2-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제특례(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겸임교원 등과 동일하게 주당 9시간 이하(최대 12시간) 적용 요청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국립경국대학교	‘25.9.1.~’29.8.31.

라. 특례 적용 방안

- 우수 강사의 교수시간 확보를 위하여 강사 주당 강의시간을 9시간 이하로 적용
- 강사의 교수시간을 겸임교원, 초빙교원과 동일하게 주당 9시간 이하(최대 12시간)로 적용
- ※ 학칙 및 규정으로 강사 주당 강의시간을 명시 예정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지역 내 대학의 수가 적어 원활한 강사 수급이 어려운 실정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의 적시 제공과 융합학부 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존중 필요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우수 강사 확보에 따른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과목 교육 실현 가능

다.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울산·경남)울산대

1-2-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통합대학 내 전문학사 학위취득자의 정원외 학사학위과정 편입학 허용)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경우 편입학 모집인원은 [별표1] 기준에 따른 정원을 별도(정원의 모집)로 규정하고 있음
-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편입학의 경우 전형유형과 모집인원에 대한 규정은 불비하여 모집이 제한됨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통합 대학 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전문학사학위 취득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정원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
- 정원의 편입학전형 운영시 모집인원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필요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의 정원의 학사학위과정 편입학 허용 및 모집인원의 자율성 부여	국립경국대학교	'27.3.1.~'31.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통합대학 내 전문학사 학위자가 학사학위 과정으로 정원의 편입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인원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폭넓은 전공 선택권 보장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
- 규제특례 적용 시 「국립경국대학교 학칙」개정을 통해 전문학사학위취득자가 일반학사학위 과정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유형, 전형방법, 모집정원 등 편입학 전형 운영을 위한 학사관련 제규정 개정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정원 내 일반편입학 전형은 결원 인원에 따라 여석이 산정됨에 따라 전문학사 과정 후 학사학위 과정 진입에 제약을 받으므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
- 국립경국대는 통합대학으로 전문학사학위와 일반학사학위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 혁신 교육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규제특례 허용을 통해 통합대학 내 전문학사학위 취득자가 학사학위과정으로 정원의 편입학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을 정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선택권의 폭넓은 보장 및 학생 중심의 융합 교육 실현
- 규제특례를 통해 편입학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학습자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운영 체계 마련

다.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광주·전남)국립목포대
- (전북)원광대

1-2-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의 규제특례(국·공립대학 통합의
경우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 제2호, 제3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4년의 전보 제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규제특례를 통해 「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통합대학에 한해 공무원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보를 허용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필수보직기간 준수	국립경국대학교	‘26.3.1.~’30.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원활한 전보인사를 통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간 격차 완화
- 특히,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모델을 안착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지원

※ (현행)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 (개선) 국·공립대학 통합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6호 적용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국립대학간 통합시에는 기존 국가공무원이 그대로 통합대학에 소속되어, 필수보직기간(2년)이 지나지 않아도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6호*에 의거하여 다른 직위에 전보 가능

*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지만, 국·공립대 통합시에는 공립대학교 공무원이 기존 광역지자체로 복귀함에 따라 신규 경력경쟁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1항 2호, 3호) 채용으로 선발된 공무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4년) 준수가 요구됨
- 이에 따라, 국립대와 공립대의 분절적인 조직체제를 개선하고, 국·공립대 통합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캠퍼스간 공무원 전보 유연화 필요가 있음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국립대학과 공립대학간의 업무 격차를 공무원 전보 유연화를 통해 조속히 완화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의 성공적 안착 활성화

1-2-12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제특례(재직 교직원 연구용역비(일반 연구비) 지급)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연구용역비’에 관한 부분 중 관련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의 경우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명시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구용역비’에 관한 부분 중 관련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규정으로는 교내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
- 연구력 향상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내 교원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의 경우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명시된 부분을 글로벌대학 사업기간에 지급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 요청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연구력 향상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연구비로 연구비 지급	국립경국대학교	'25.9.1.~'29.8.31.

라. 특례 적용 방안

- 글로컬대학 사업기간 동안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의 경우, ‘글로컬대학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한시적 수정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연구력 향상을 위한 필요 사업 중 외부 연구과제가 아닌 교내에서 연구 과제를 설계·공모하고 그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내부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 신진 우수 연구인력 유입 등의 효과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
- 따라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의 경우 ‘글로컬대학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도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한시적으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연구 활동에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비를 사업비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력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수행이 가능
- 교내 우수 연구 아이템이 외부 과제 수주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추진된 경우, 교내 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비 지급, 더불어 향후 대형 과제로의 확대
- 다양하고 발전적인 사업계획과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추후 글로벌대학의 사업 성과 달성

다.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대구·경북)경북대
- (울산·경남)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 (충북)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1-2-13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계약학과 이동수업 규제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해당 규정 제31조(준용규정)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학과 설치 위치 관련하여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할 경우 대학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나 ‘교지·교사가 아닌 공간’은 ‘학교 내’로 인정받기 어려움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관련 규정)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현 행	개정안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신설〉	제20조(이동수업) ① <u>계약학과는 학교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u>⑨ 본 조 제1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본 조에서 규정하는 이동수업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u>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대학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 내 강의공간 활용	국립경국대학교	'27.3.1.~'31.2.28.

라. 특례 적용 방안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의 제20조(이동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립경국대학교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함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계약학과 운영 대상이 'OO시(군) 소재의 산업체 재직자'로 재학생들의 수업 접근성 및 협약 대상인 산업체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OO시(군) 소재의 학교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 내에서의 수업 운영이 적합
- 대학 소유의 '교지·교사가 아닌 공간'을 '학교 내'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만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수업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지역과 대학의 협력과 상생 관계 구축
- 학습 환경 개선 및 학사 행정 업무 공간 개방으로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

다. 국내·외 유사 사례 및 해외 동향

- (울산·경남)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1-2-1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제특례(국외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가공무원 파견 제도 유연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는 타 기관의 파견만 가능하고, 국내 대학의 국외 교육시설 근무는 해당이 없음
-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집행지침에는 기존 교직원의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립경국대학교 글로벌대학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국가공무원(교원 또는 직원)의 국외 교육시설 근무 필요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국립경국대학교 소속 국가공무원(교원 또는 직원)을 국외 교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임용의 자율성을 부여
- 해외 근무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글로벌대학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대학 예산집행 지침 개정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의 장에게 소속 국가공무원의 해외근무 임용권 허용 및 국외 교육시설 근무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소요액을 글로벌사업비로 지원	국립경국대학교	'25.9.1.~'29.8.31.

라. 특례 적용 방안

- 국립경국대학교 글로벌대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국가공무원을 국외 교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권 부여
- 국립경국대학교 국외 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해외근무수당 등 필요 인건비를 글로벌대학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글로벌대학 사업 취지에 따라 해외에 한국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파견 필요
-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 및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을 해외 현지에서 적극 홍보 및 우수 유학생 유치가 절실함에 따라 규제특례 필요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해외 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 입학생 유치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을 향상 등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도모

1-2-15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제2장 제4번의 규제 특례 (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시 재정입증서류)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제2장의 제4번에 따르면, 체류 비자 연장 시,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800만원 제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학위과정) 글로벌대학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관련 규정 적용을 완화하여, 국제화역량 인증제 받은 대학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 시 C학점 미만일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800만원에서 400만원(한화 1,600만원의 1/4 완화)으로 제출 허용

현재		변경 요청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1/2 완화 제출 (한화 1,600만원의 1/2 ⇒ 한화 800만원)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1/4 완화 제출 (한화 1,600만원의 1/4 ⇒ 한화 400만원)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체류비자 연장시 C학점 미만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400만원 제출 완화 요청	국립경국대학교	'25.9.1.~'29.8.31.

라. 특례 적용 방안

- 재정능력 입증 금액을 낮추면 학생이 부담이 줄어들며, C학점 이하의 성적을 받더라도 재정 능력 입증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어 학업 능력 증진에 도움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국립경국대학교는 글로벌대학 추진을 통해 K-인문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체류 연장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입증 요구가 유학생의 학업 지속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유학생이 취득하는 C학점은 한국인 재학생과 동일한 상대평가 체계 속에서 획득한 성적이므로, 단순히 낮은 학점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학업에 집중하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 재정입증 요건이 과도할 경우, 학생들은 본래 학업에 전념하기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는 학업 성취 저하와 불법체류 위험을 증가시켜 제도의 본래 목적과도 배치
-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입증을 완화하여,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글로벌대학 국제화 전략에 맞춰 유학생 친화적 제도 환경을 구축하고, 체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학생이 학업과 지역사회 정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정적인 유학생 체류 보장 제도 마련으로 글로벌대학의 인문학 선도 성과의 일환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달성도 충족과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 경상북도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졸업 후 지역 정착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 국립경국대학교의 K-인문 활성화 및 확산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대학으로서 국제공동연구, 해외네트워크 확산 과제 등과 시너지 창출

1-2-16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의 규제특례(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지표 완화)

(1) 규제 현황

가. 신청 사유

법령상 기준·요건 부적합	법령에 의한 금지	기타
√		

나. 규제 현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유치 경쟁력과 국가정책 연계성 확보에 필수적인 제도(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지원을 평가)이며, 인증 평가지표에서 불법체류율은 기본 요건 지표로서, 현재 재학중인 유학생 수마다 통과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2) 규제특례 신청 내용 및 적용 방안

가. 특례 대상 고등교육분야

대학 경영 (대학설립 4대요건 등)	학생 정원 (입학정원, 정원내/외 등)	학사 운영 (교육과정, 학사운영, 학위부여 등)	기타
√			

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지표에 불법체류율 통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현재		변경 요청	
재적중인 유학생 수	통과 기준	재적중인 유학생 수	통과 기준
재적생 50명 미만	불법체류자 1명 이하	재적생 50명 미만	불법체류자 3명 이하
재적생 50명 이상 100명 미만	불법체류자 2명 이하	재적생 50명 이상 100명 미만	불법체류자 5명 이하
재적생 100명 이상 150명 미만	불법체류자 3명 이하	재적생 100명 이상 150명 미만	불법체류자 6명 이하
재적생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2% 미만	재적생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4% 미만
재적생 1,000명 이상	1% 미만	재적생 1,000명 이상	1% 미만

다. 특례 적용 대상 기관

기관명	적용 내용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국립경국대학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지표 완화	국립경국대학교	‘25.9.1.~’29.8.31.

라. 특례 적용 방안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지표에 불법체류율 통과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행정력을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관리, 법적 체류 지도, 지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재투입 할 수 있도록 개선

(3) 해당 규제특례의 필요성

가. 규제특례의 필요성

- 현행 지표는 대학 규모와 외국인 유학생 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특히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은 대학은 단 한 명의 사례만 발생하더라도 불법체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인증평가에서 불합격 위험이 커짐
- 이는 글로벌대학 사업 실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로컬 기반 인문콘텐츠 확산 등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대학의 국가 정책사업 수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대학의 규모와 유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완화된 지표 적용 필요

나. 규제특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합리적 인증 기준 마련으로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행정력을 글로벌대학의 주요 성과인 유학생 학업·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조기 정착을 지원
- 글로벌대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제화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캠퍼스 조성, 국제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확대 기반 마련
- K-인문 콘텐츠 확산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실행계획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 기반 인문학의 세계화를 선도하며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공공형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 제출기간: 2025. 09. 24. ~ 10. 23.(공고일로부터 30일 간)
-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 작성 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기획처 재정전략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대학정책국 대학정책과(113동 3층)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대학정책과
 - E-mail: (경북대)ksh3282@knu.ac.kr/(대구)daisicblue@korea.kr/(경북)
kyj0323k@korea.kr
- 관련문의: 경북대학교 기획처 재정전략과 글로컬대학팀(Tel: 053-950-2186),
대구광역시청 대학정책국 대학정책과 대학사업팀(Tel: 053-803-6085),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대학정책과 대학정책팀(Tel: 054-880-4562)

붙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요청(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 성 명(기관명) :

○ 연 락 처 :

☐ **의견 사항**

규제특례(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또는 추가 내용	사유

상기 본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계획에 포함된 규제 특례 요청(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 .

의견제출자 : (인)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귀중



시 군

고 시

구미시 고시 제2025-24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오탁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미시 임은동 산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오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구 미 시 장

1. 사업내용

구분	사업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규모	도시계획 결정일자
당초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	오탁공원 조성사업	임은동 산7번지 일원	A=220,433.6㎡	건설부고시 제6645호 (1973.12.31.)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	오탁공원 조성사업	임은동 산7번지 일원	A=65,696.6㎡	건설부고시 제6645호 (1973.12.31.)

2. 사업시행자

주 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

성 명 : 구 미 시 장

3.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붙임과 같음

※ 관계서류 및 도면은 구미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면게재생략)

□ 공원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계	기정				247,665.1	220,433.6				
	변경				241,737.1	65,696.6				
1	기정	임은동	103-1	전	575	575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이O		
	변경	임은동	103-1	전	575	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이O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2	기정	임은동	103-2	전	486.0	486.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5길* (상모동)	한O형		
	변경	임은동	103-2	전	486.0	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5길* (상모동)	한O형		
3	기정	임은동	103-3	전	1,319.0	1,319.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5길 * (상모동)	조O회		
	변경	임은동	103-3	전	1,319.0	1,319.0		구미시		
4	기정	임은동	103-4	전	813.0	813.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5길 * (상모동)	한O형		
	변경	임은동	103-4	전	813.0	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5길* (상모동)	한O형		
5	기정	임은동	183	전	2,017.0	2,017.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	박O회		
	변경	임은동	183	전	2,017.0	2,017.0		구미시		
6	기정	임은동	185-2	전	2,252.0	2,252.0	대구광역시 동구 동변동 *	이O형		
	변경	임은동	185-2	전	2,252.0	2,252.0		구미시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7	기정	임은동	185-3	임야	337.0	337.0	대구광역시 동구 동변동 *	이O형		
	변경	임은동	185-3	임야	337.0	337.0		구미시		
8	기정	임은동	185-5	유지	12.0	12.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조O현		
	변경	임은동	185-5	유지	12.0	12.0		구미시		
9	기정	임은동	186-7	답	20.0	20.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조O현		
	변경	임은동	186-7	답	20.0	20.0		구미시		
10	기정	임은동	187	답	798.0	798.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조O현		
	변경	임은동	187	답	798.0	798.0		구미시		
11	기정	임은동	187-1	답	992.0	992.0	구미시 임은길 * (임은동)	구O호		
	변경	임은동	187-1	답	992.0	992.0		구미시		
12	기정	임은동	188	묘	783.0	783.0		국(기획재정부)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13	기정	임은동	189	답	2,307.0	2,307.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3길 * (임은동, 백산골든타운 2차)	김O식		
	변경	임은동	189	답	2,307.0	2,307.0		구미시		
14	기정	임은동	190	전	126.0	126.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3길 * (임은동, 백산골든타운 2차)	김O식		
	변경	임은동	190	전	126.0	126.0		구미시		
15	기정	임은동	191	전	2,605.0	2,605.0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길*(임은동)	조O상		
	변경	임은동	191	전	2,605.0	2,605.0		구미시		
16	기정	임은동	192	전	1,940.0	1,940.0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1길 *(임은동)	문O학		
	변경	임은동	192	전	1,940.0	1,940.0		구미시		
17	기정	임은동	193	전	823.0	823.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강8길 * (화성타운)	유O중		
	변경	임은동	193	전	823.0	823.0		구미시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18	기정	임은동	194-2	전	652.0	652.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조O현		
	변경	임은동	194-2	전	652.0	652.0		구미시		
19	기정	임은동	195-3	전	81.0	81.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조O현		
	변경	임은동	195-3	전	81.0	81.0		구미시		
20	기정	임은동	213	전	399.0	399.0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조O현		
	변경	임은동	213	전	399.0	399.0		구미시		
21	기정	임은동	214	전	1,197.0	1,197.0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	김O희		
	변경	임은동	214	전	1,197.0	1,197.0		구미시		
22	기정	임은동	227	전	2,700.0	2,70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4길 * (임은동)	박O식		
	변경	임은동	227	전	2,430	2,430		구미시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23	기정	임은동	227-4	전	270.0	27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4길 * (임은동)	박O식		
	변경	임은동	227-4	전	270.0	270.0		구미시		
24	기정	임은동	228	전	575.0	575.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12길 *(오태동, 신한그린타운)	박O용		
	변경	임은동	228	전	575.0	575.0		구미시		
25	기정	임은동	229-1	전	247.0	24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삼O주택 O식회사		
	변경	임은동	229-1	전	247.0	247.0		구미시		
26	기정	임은동	769-12	구거	6,259.0	815.0		국(농림 축산 식품부)		
	변경	임은동	769-12	구거	5,443	815		국(농림 축산 식품부)		
27	기정	임은동	769-20	구거	402.0	402.0		국(농림 축산 식품부)		
28	기정	임은동	769-21	구거	140.0	140.0		국(농림 축산 식품부)		
29	기정	임은동	769-43	구거	992.0	992.0		국(기획 재정부)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30	기정	임은동	823	도로	9,563.5	2.0		구미시		
31	기정	임은동	826	도로	229.6	168.6		구미시		
32	기정	임은동	산6-8	임야	82,909.0	82,909.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5길 * (상모동)	한O형		
	변경	임은동	산6-8	임야	82,909.0	0	경상북도 구미시 박 정희로5길 *상모동)	한O형		
33	기정	임은동	산7	임야	44,233.0	32,068.0		구미시		
34	기정	임은동	산8	임야	5,554.0	5,55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 (범어동, 우방범어타운)	허O형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9길 * (정평동, 현대타운)	박O훈		
	변경	임은동	산8	임야	5,554.0	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 (범어동, 우방범어타운)	허O형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9길 * (정평동, 현대타운)	박O훈		
35	기정	임은동	산9	임야	59,288.0	59,288.0	구미시 형곡로25길 * (형곡동, 상록주택)	백O택		
							구미시 형곡로25길 * (형곡동, 상록주택)	백O원		
	변경	임은동	산9	임야	54,446	0	구미시 형곡로25길 * (형곡동, 상록주택)	백O택		
							구미시 형곡로25길 * (형곡동, 상록주택)	백O원		

연번	구분	토지소재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36	기정	임은동	산9-1	임야	7,434.0	7,434.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북현동, 북현서한타운)	유0영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 (형곡동)	김0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 (범물동, 우방미진하이츠)	장0경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6길 * (송정동, 삼성장미아파트)	장0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 (용산동, 성서2차 영남우방타운)	이0훈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 (도원동, 아람마을)	박0현		
	변경	임은동	산9-1	임야	7,434.0	7,434.0		구미시		
37	기정	임은동	산9-2	임야	267.0	26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	삼0주택 O식회사		
	변경	임은동	산9-2	임야	267.0	267.0		구미시		
38	기정	임은동	산9-11	임야	4,842.0	4,842.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5길 * (형곡동)	백0택		
	변경	임은동	산9-11	임야	4,842.0	0	경상북도 구미시 완산로 *	문0자		
39	기정	임은동	산36	구거	238.0	238.0		국(건설 교통부)		
40	기정	임은동	산37	구거	988.0	988.0		국(농림 수산부)		

상주시 고시 제2025-193호

상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주시 신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6	4~6	국지 도로	47	소로 1-5	소로 3-29	일반 도로	-	경고 제279호 (85.12.7)	
변경	소로	3	126	6	국지 도로	74	소로 1-5	소로 3-29	일반 도로	-	"	노선 연장증가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26	소로 3-126	- 노선연장 증가 - B=4m~6m → 6m - L=47m → 74m, 증) 27m	신봉동 주거지역 내 남북간 단절된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및 노선연장 증가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상주시 고시 제2025-194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503-1번지 일원의 상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이화 배수지	공성면 이화리 503-1번지 일원	-	증) 611	611	-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이화 배수지	배수지 신설 - 611m²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제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4) 및 상수도사업소(☎ 054-537-55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경산시 공고 제2025-171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옥산5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경산시 중산동 35-2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옥산5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경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25. 9. 25. ~ 2025. 10. 10.(초일불산입 14일 이상)

2. 열람장소 : 경산시청 공원녹지과,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3. 열람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1)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55	옥산5 공원	어린이 공원	중산동 35-2번지	2,956.2	-	2,956.2	경상북도 고시 제1994-68호(94.03.30)	

나) 공원조성계획 : 변경

시설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2,956.2	-	2,956.2	1,798.2	감)25.2	1,773.0	-	증)30.0	30.0	
1. 도로 및 광장	중산동 35-2번지	1,139.5	감)364.9	774.6	1,139.5	감)364.9	774.6	-	-	-	
2. 조경시설	중산동 35-2번지	-	증)107.4	107.4	-	증)107.4	107.4	-	-	-	
3. 유흥시설	중산동 35-2번지	216.2	증)344.4	560.6	216.2	증)344.4	560.6	-	-	-	
4. 운동시설	중산동 35-2번지	442.5	감)180.5	262.0	442.5	감)180.5	262.0	-	-	-	
5. 편의시설	중산동 35-2번지	-	증)68.4	68.4	-	증)68.4	68.4	-	증)30.0	30.0	
6. 녹지	공원 전지역	1,158.0	증)25.2	1,183.2	-	-	-	-	-	-	

4.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 경산시청 공원녹지과로 우편(경산시 남매로 159)

또는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공원녹지과(☎053-810-6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550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비관리청 하천공사(소수력 발전소 설치(안동보 및 수하보))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남부발전(주)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 확보 및 개발
- 사유 : 현재 무효방류하고 있는 여분의 하천수를 이용하여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소수력 발전소 설치

※ 변경사유 :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변경내용 : 가물막이 (쉬트파일) 추가, 수하보 전기실 기초 변경 공사기간 연장)

4.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번지
- 수하보 소수력 발전소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797번지 등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 2020년 07월 08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 (변경) 2020년 07월 0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 적 (㎡)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	천	209,843	3,086	6,474		국(국토교통부)
안동보 소수력발전 소계					3,086	6,474		
2	경상북도 안동시	797	천	328,296	2,900	5,660		국(국토교통부)
3	수하동	797-1	제	6,012	176	20		국(국토교통부)
수하보 소수력발전 소계					3,076	5,680		
합계				544,151	6,162	12,15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의제)

가.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1381-1	2,775	증) 311	3,086	-	국가하천 (낙동강)과 중복결정

□ 전기공급설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	- 면적 : 2,775㎡ - 면적 : 3,086㎡	- 기존보 부벽 간섭에 따른 발전소 위치 이동 및 차수방법 변경(가물막이→중첩 CIP 및 유입·유출부 쉬트파일) 등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법 제88조)

1)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 건설공사	경북 안동시 옥동 1381-1 일원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	전기공급설비 면적 : 2,775㎡ 면적 : 3,086㎡	100KW (500×2대)	허가일로부터 5년	59.1억원

다. 사업시행자(법 제86조)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 ~ 35층)
-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남부발전(주) (신재생사업본부)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58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예천군 맑은물사업소장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 면적 : 1,30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풍양취수장(생활용수)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풍양취수장 1식 - 집수매거(D600mm, L=80m), 도수관(D500mm, L=187.5m) - 취수정(D5,000mm, H=14.35m), 취수장 1동(49.2㎡) - 집수매거(D900mm, L=70m), 도수관(D500mm, L=144m) - 집합정(D4,000mm, H=13.3 ~ 13.4m) 3개소
점 용 기 간	당초 : 2020년 09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31일까지 변경 : 2025년 09월 01일부터 2030년 08월 31일까지



기 타

공 고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5-09호

과태료 독촉(최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5.

구 미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9. (2주간)
2. 납부대상 : 최○락
3. 송달내역 : 과태료 독촉(최고) 통지서
4. 납부장소 : 은행(고지서 납부)

5. 과태료 내역

회계연도	부과번호	납기일자	과태료 금액
2025	제2025-04호 (과태료 납부 통지)	2025-10-31	금250,000원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64-○○10○동 ○07호		
위반 사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1회)		

6.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 2025년 10월 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사 황혁찬	전화번호	(054)440-014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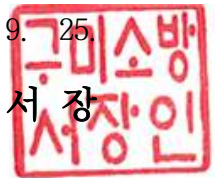
구미소방서 공고 제2025-10호

과태료 독촉(최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5.

구 미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9. (2주간)
2. 납부대상 : 나○원
3. 송달내역 : 과태료 독촉(최고) 통지서

4. 납부장소 : 은행(고지서 납부)

5. 과태료 내역

회계연도	부과번호	납기일자	과태료 금액
2025	제2025-03호 (과태료 납부 통지)	2025-10-31	금5,000,000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24-2○		
위반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6.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 2025년 10월 31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사 황혁찬	전화번호	(054)440-0143
------	----------------	-----	---------	------	---------------



기 타

지 시 사 항

도 지 사 지 시 사 항

- 2025.9.17.(수)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점검회의 시 -

관리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27	○ 도, 경주시 실국별 APEC 준비 소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	APEC 준비지원단 (전 부서)
훈 시	○ 경북이 이번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는다는 각오로 임할 것	전 부서